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	수험번호
	이메일(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이메일)		
주 소 (우편번호 포함)	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
반환청구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신청시 유의사항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지원자 정보는 누락 없이 반드시 모두 기재(누락 정보가 있을 경우 반환불가)- 반환요청 서류 명칭 기재- 자필 서명 후 스캔(PDF 또는 JPG)하여 제출- 반환청구서(자필서명)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신용보증기금 귀중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